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532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532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가소2669293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수경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2022. 5. 25.

판결 선고2022. 9. 21.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가소266929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51,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20. 10.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3항 금원지급부분(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16. C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입원특약, 무배당특정질병입원특약 등이 포함된 D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 1.부터 2013. 3. 29.까지 사이에 9차례에 걸쳐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2009. 6. 2. 1,450,000원, 2009. 8. 7. 800,000원, 2009. 8. 25. 750,000원, 2009. 10. 26. 1,050,000원, 2011. 6. 15. 1,750,000원, 2011. 10. 5. 1,400,000원, 2012. 6. 14. 2,501,338원, 2012. 9. 25. 1,000,000원, 2013. 4. 29. 852,49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C와 공모하여 종합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기간보다 더 길게 입원하여 많은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9차례에 걸쳐 합계 11,553,828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다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50,765,906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8. 7.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9고단4330)에서 위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1. 4. 2.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0노2713)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21. 5.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9차례에 걸쳐 합계 11,553,828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반증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553,828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위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6. 15.부터 2013. 4. 29.까지 편취한 보험금 7,503,828원(=1,750,000원+1,400,000원+2,501,338원+1,000,000원+852,490원) 중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 입원에 해당하는 보험금 합계 3,651,3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3.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10.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재철

판사송효섭

판사강지현